

16 (第123回-第3次)

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 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·같은 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(이하 "집단에너지공급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 및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제3호중 "허가를 받은 자"를 "등록을 한 자"로 한다.</p> <p>제7조제1항 및 제12조중 "수용가"를 각각 "사용자"로 한다.</p> <p>제12조제1항중 "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"을 "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"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중 "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제1항"을 "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시행령"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다중이용화장실개방에따른 보조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width: 15%;">700</td><td style="width: 15%;">2000년 11월</td><td style="width: 15%;">환경수자원위원회</td>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9월 19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회부일자 : 2000년 9월 21일 회부</p>	의안 번호	700	2000년 11월	환경수자원위원회	<p>다.상정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제1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(2000년 10월 5일 상정, 보류) -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(2000년 11월 6일 상정, 가결) <p>2. 제안설명의 요지</p> <p>(제안설명 : 환경관리실장 김승규)</p> <p>가.제안이유</p> <p>도심지 및 관광지역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.</p> <p>나.주요골자</p> <p>■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조건을 정함(안 제3조)</p> <p>1)대상 : 도심지 및 관광지역(인사동·이태원거리, 남대문·동대문시장, 신촌등)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</p> <p>※다중이용화장실 : 주유소, 음식점, 대형빌딩, 터미널, 극장, 예식장, 시장, 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</p> <p>2)조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의 개방 ○ 안내표지판, 안내유도 사인의 설치 및 부착의 허용 <p>■보조범위·방법 및 기간을 정함(안 제4조)</p> <p>1)범위 : 소모품비, 전기료, 상·하수도료,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</p> <p>2)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 산출을 근거로 매월 지급 ○ 파손에 의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 지급 <p>3)기간 :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</p> <p>■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고,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의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</p> <p>다.참고사항</p> <p>■관계법규 :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재정법
의안 번호	700	2000년 11월	환경수자원위원회		